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ietnam's Transfer Pricing Revamp Redefines Related Parties \(Bloomberg BNA TP report Vol.25, No.23, p.1329\)](#)

베트남: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 공포

베트남 정부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Decree No. 20)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세 회피를 위해 활용되는 이전가격 거래 형태에 대한 설명과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를 통한 법인 별 수익 및 납세금액에 대한 정보 제출의무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7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고서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구비해야 하며 세무당국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다자간 국가별보고서 교환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며, 만약 해외에 소재한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베트남에 소재한 모회사의 연결매출액이 18조 VND(약 7억 9,000만 달러)이상인 경우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10 May 2017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의 개정안

본 시행령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의를 완화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 25% 이상의 지분관계(보통주 기준)를 가진 법인(개정 전: 20% 이상)
-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자본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여해주는 경우(개정 전: 20% 이상)
- 매출 및 매입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현행 법규는 폐지

용역비용이 손금 되는 지 여부

또한 본 시행령은 만약 특수관계자간의 용역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비용에 대한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하며, 산정된 대가가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 되었습니다.

면제규정

납세자는 만약 정부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을 협의 했거나, 연간 매출액이 500억 VND(약 25억 원)이하 혹은 특수관계자 거래규모가 300억 VND(약 15억원)이하인 경우 이전가격 보고서 제출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통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제출 기준은 연간 매출액 2,000억 VND(약 100억 원)입니다. 통상적인 기능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처벌규정

납세자들은 법을 어길 경우 최대 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되며, 조세를 회피할 경우 최대 회피금액의 3배의 달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현지 이전가격 규정 관련 현황

현지 이전가격 외부전문가인 Phat Tan Nguyen는 “세무당국은 기존의 전자, 섬유 및 의류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던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이제는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동료인 Robert King에 의하면 이전가격 규정 남용으로 인하여 연간 약 1,0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의 세원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ecret Comparables

Nquyen에 의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납세자 혹은 공공에게 공개되지 않은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비교가능회사(이를 secret comparables라 칭함)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납세자에게 과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규정에 반하는 과세처분이 때문에 베트남 이전가격 조사 실무에서 중요한 다름이 되고 있습니다.

UK: Transfer pricing dispute resolution, new remedies reflecting BEPS recommendations

영국: BEPS 권고사항을 반영한 이전가격 분쟁해결 및 대응방안

BEPS Action 14 는 국제적인 조세분쟁 해결장치 재정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OECD,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영국 국세청(HMRC)이 지속적으로 공포한 다수의 자료는 이전가격 관련 분쟁해결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BEPS 프로젝트의 경우 각국의 세무당국이 BEPS 체제를 서로 다르게 해석함에 따라 국가간의 조세분쟁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전가격관련 및 국가간의 조세분쟁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위험은 다국적기업 입장에서 중대한 문제로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부담이 되고 대응방안에 제한이 있음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이중과세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OECD BEPS action plan 이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 Action 14 는 이중과세 완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서, 국제조세 규정을 평준화 할 것이라고 예상 하였으나 Action 14 은 15 가지의 Action 중 가장 더딘 진전을 보였으며, 각국에 의무적 중재방안(mandatory arbitration)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무적 중재방안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됨에 따라, OECD 는 상호 조세 협약을 통해 BEPS Action 14 에 기반한 최적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20 개국이 OECD 다자간 기구 (Multilateral Instrument, 이하, "MLI")를 통해 의무적 중재방안을 채택하여 도입하였고 타국가들도 향후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소득이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우회수익세(diverted profits tax)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는 공격적인 tax planning 을 수립하는데 있어, 이에 관련된 조세 불확실성은 보다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국세청인 HMRC 가 발표한 정상가격 사전협의제도 (Advance pricing agreements, 이하, "APA")의 개정안은 기존 보다 엄격한 승인기준을 규정하였으며, APA 또는 질의절차 외의 이전가격 관련 협의 및 논의를

방지하는 규정 또한 명시하였습니다. 영국은 MLI 를 통한 의무적 중재방안을 활용하는 나라 중 하나로서, 최근 주요 무역국가들과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무적 중재방안을 적용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국가별보고서가 제출되고 신규 이전가격 규정들이 시행 됨에 따라 다수의 분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하여 신규 분쟁 해결 방안의 유효성이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 행정당국이 해당 관할기관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력 과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성공요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Australia: Country-by-country reporting, Local and Master files detailed design](#)

호주: 국가별 보고서, 개별기업 보고서, 통합기업 보고서 상세서식 발표

호주과세당국(이하 "ATO")은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reporting)의 작성의무가 있는 '다국적기업'에게 지침을 제공하고자 정부 웹 사이트에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와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의 상세 서식(detailed design)을 발표하였습니다. .

주요사항

- 본 서식은 XML schema (OECD에서 배포한 전자표준 작성형식) 형태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의 구비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XML schema 는 개별기업보고서의 3가지 형식(요약형식, A파트 -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B파트 - 중대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통합기업보고서를 별도 제출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제출 시점을 활용함에 따라 기존에 제출하던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특수관계거래 정보서식, 이하, "IDS")"의 A파트에 대한 제출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개별기업보고서의 A파트로 대체할 수 있음).
- 또한 본 서식에는 개별기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행정상의 정보(예: 해외법인이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이에 따른 통지 요건 등)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요약형식 및 A파트, B파트에 작성되어야 할 거래내역 및 기업정보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발표된 서식에는 기존 서식과 비교하여 거래유형, 정상가격산출방법 등의 공식적인 명칭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국제조세 설명회 개최 안내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세청은 최근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논의 등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된 주요 법령 내용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조세분쟁이 많은 인니 / 중국 / 인도 현지 진출 기업을 지원하고자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국제조세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세미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사개요

일시: 2017.5.18(목) 9:30 ~ 12: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지하2층)

참석대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원기업 임직원 (참가비 무료)

주요 내용 및 진행순서:

시간	내용	발표자
9:30~9:35	인사말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9:35~9:45	상호합의 / APA 운영 현황	국세청
9:45~09:55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 국조법 개정내용	국세청
9:55~10:05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 안내	국세청
10:05~10:20	장내 정리	
10:20~10:30	인사말씀	인도네시아 국세청장
10:30~11:20	인도네시아 국제조세 세정동향	인도네시아 국제조세국장
11:20~11:40	중국 이전가격 등 세정동향 / 사례	중세자문집단 김일중 회계사
11:40~12:00	인도 이전가격 등 세정동향 / 사례	삼정회계법인 백승목 회계사

- 문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김현신 차장

(Tel: 02-6050-3463, E-mail: hyunshinkim@korcham.net)

※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참석여부를 5월 12일(금)까지 온라인 신청 또는 참가신청서([클릭](#))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 아시아 택스 어워즈에서 '이전가격 자문상' 수상](#)

삼성KPMG는 세계적인 국제조세전문지 ITR (International Tax Review) 이 선정하는 '2017 아시아 택스 어워즈(Asia Tax Awards)'에서 한국부문 '올해의 이전가격 자문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2017 아시아 택스 어워즈'는 매년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인도, 호주 등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서비스의 혁신성, 독창성, 영향 등을 평가해 국세, 이전가격, 소송 및 분쟁 분야별 최고의 자문사를 선정하고 있는데, 삼성KPMG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다양한 이전가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전가격 분야에서 명성과 권위를 인정받아 '올해의 이전가격 자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